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및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66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 2. 제안이유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의 상황 및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경감 부담 및 지원대상의 의료적 필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등(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과 수행기관 선정 취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예산의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2조

3)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어르신등의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을 하며 병원동행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방법, 신청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규정함

#### 3) 지원대상, 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대상 :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등

#### 4)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과 수행기관 선정 취소(안 제6조 및 제7조)

- 어르신·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을 관내 사회복지 시설 기관 등으로 규정함

## 5) 예산의 지원 및 홍보(안 제8조 및 제9조)

###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병원동행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장애인의 병원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 2024. 11. 1.] [법률 제19814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07. 8. 3.]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